#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14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위성곤·모경종·김성환

이춘석 • 박희승 • 한병도

서영교 · 김한규 · 이건태

허 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의료인을 포함하여 포고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처단하겠다고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내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침입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고(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며(안 제11조제2항), 계엄을 통한 관장사항 및 특별조치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은 제외함으 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 신설).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거쳐야"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계엄 선포의 통고)"를 "(계엄 선포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고(通告)"를 "통고(通告)하고 승인을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12시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선포된 계엄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국회와 국회의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은 국회와 국회의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을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

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⑤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u>거쳐야</u> 한다.	거쳐 국회의 승인				
	<u>을 받아야</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	제4조(계엄 선포의 승인) ①				
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u>통고</u>	<u>통고</u>				
<u>(通告)</u> 하여야 한다.	<u>(通告)하고 승인을 요청</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12				
	시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국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선포된 계엄을 즉시 해				
	제하여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국회와 국회의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 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생 략)

	<u>(5)</u>	제1	항부	터	제4호	항까.	지의	사
	항(	<u>o</u>	국회의	라	국호	의의	원에 :	게는
	영경	향을	미치	지	아니	한디	<u>}.</u>	
제	112	조(겨	]엄의	해	제)	1		
	회!	복된	경-	우에	는	국년	무회:	의의
	심 <u></u>	의를	거쳐					

②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